

〈고용노동부 상/담/전/화〉

국번없이 **1350**

• 서울고용노동청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-2250-5703~4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02-2639-2112~3
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02-3465-8441~7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02-950-9880~1
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02-2142-8896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02-3282-9111~2
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02-2077-6103~7

• 중부고용노동청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032-460-4545~7 고양고용노동지청 031-931-2801~4
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032-540-7910~12 성남고용노동지청 031-788-1505~8
경기고용노동지청 031-259-0203~5 강원고용노동지청 033-258-3551~2
평택고용노동지청 031-617-9010 강릉고용노동지청 033-650-2500
부천고용노동지청 031-714-8700~3 원주고용노동지청 033-769-0800
안양고용노동지청 031-463-7302~4 태백고용노동지청 033-552-0009
안산고용노동지청 031-486-0009 영월출장소 033-374-0009
의정부고용노동지청 031-850-7773~5

• 부산고용노동청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-853-0009 울산고용노동지청 052-272-0009
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051-559-6688 양산고용노동지청 055-387-0009
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051-309-1500~5 진주고용노동지청 055-752-0009
창원고용노동지청 055-239-6500 통영고용노동지청 055-645-0009

• 대구고용노동청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-667-6200 구미고용노동지청 054-450-3500~3
대구북부고용노동지청 053-605-9000~5 영주고용노동지청 054-639-1111
포항고용노동지청 054-271-6700 안동고용노동지청 054-851-8000~4

• 광주고용노동청

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2-975-6201~4 군산고용노동지청 063-452-0009
제주근로개선지도과 064-728-6100 목포고용노동지청 061-284-0009
전주고용노동지청 063-240-3400 여수고용노동지청 061-650-0109
익산고용노동지청 063-839-0008~9

• 대전고용노동청

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-480-6290~3 충주고용노동지청 043-840-4000~4
청주고용노동지청 043-299-1131~3 보령고용노동지청 041-930-6138~9
천안고용노동지청 041-560-2800~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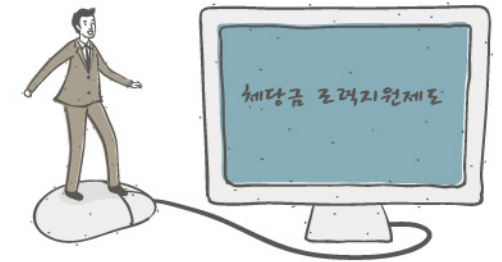
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이 체불되고 있습니까?

10명 미만 사업장
근로자는
비용부담 없이
체당금을 받을 수
있습니다.



체당금 조력지원제도란?

10명 미만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(휴업수당)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및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

신청자격은 이렇습니다

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장 전체 상시 근로자 월평균보수액이 20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및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


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

지원대상여부 상담부터 체당금 조력지원신청서 작성, 도산사업장 방문 등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관한 입증 자료 파악,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및 체당금 지급청구서 작성 등 일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
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.

소요비용은 정부가 공인노무사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.

※ 다만, 체당금 총 지급액이 1,0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체당금 수령액의 2% 이내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.

신청절차는 이렇습니다

지방고용노동청(지청) 고객지원실에서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 관련 기본상담 ➔ 조력대상여부 1차 확인 및 노무사 추천(감독관) ➔ 신청서 접수 및 조력지원 ➔ 최종확인 및 조력지원대상여부 통보 ➔ 체당금 지급



※ 신청서식은 고객지원실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의 전자민원창구 → 민원서식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도산등사실인정 등 체당금업무는 이렇게 진행됩니다.

30일

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접수



사실관계 조사



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 작성



도산등사실인정 여부 결정

14일

체당금등 사실확인 및 체당금지급 청구



사실관계 조사



지급여부 결정